

2000년도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신청요강

2000. 3.

한국학술진흥재단

I. 사업 목적

대학의 육성 의지를 지닌 대학부설연구소의 내실화와 연구 역량 극대화를 통하여 연구소의 연구기능 활성화 도모

II. 기본 계획

1. 지원 예산 : 115억원(계속지원비 포함)

2. 지원 방향

- 대학의 육성 의지가 뚜렷한 연구소에 대한 장기적 집중 지원
 - 특성화 분야, 연구공간 제공, 대응자금 지원등 대학여건을 연계
- 우수연구인력의 지원 및 양성을 통한 연구소의 연구기능 활성화
 - 연구소 전임인력 확보, 연구자의 업적 중시 등 연구체제 정비
- 연구 성과의 확산과 재생산을 통한 연구지원 효과의 극대화
 - 연구과제와 관련된 정규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과 연계
(2단계 부터는 규정제정을 통한 강좌 개설 의무화)
- 계속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강화를 통한 연구지원의 실효성 확보
 - 다단계 평가를 통하여 계속지원, 중단을 결정
- 연구비 지원의 관리 및 사후평가 강화
 - 연구결과물의 엄정한 평가 및 객관화 제고
 - 실행예산서의 검토·조정 및 중앙관리 실사 강화
 - 연구수행 일정 및 결과물 제출 안내 정보화

3. 지원 분야 및 대상

가. 지원 분야 : 전 학문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

나.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의 부설연구소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되는 연구소

첫째, 대학에서 구체적인 육성 방안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한 연구소

둘째, 대학에서 연구소 전임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계획이 있는 연구소
(실사때까지 확보하여야 함)

셋째, 대학에서 독립된 전용공간과 연구시설을 지원(예정포함)하고 있는 연구소

넷째, 대학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연구소과제참여 전임인력에게 담당하게 할 연구소

※ 대학은 해당 연구소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 신청액의 25% 이상의 현금 대응투자(연구소 전임연구인력 급여 포함)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함

※ 과제참여 연구소 전임연구인력은 연구소 소속이며 대학에서 매달 180만원 이상의 급여(제 복리후생비 별도)를 지급해야 하고, 전용공간은 연구소 전용면적 15평과 연구소 전임인력 1인당 5평(연구시설제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추가확보인원은 선정후 현장실사 때까지 확보할 수 있는 연구소 포함)

※ 대학에서는 신청연구과제와 연계된 학점 인정 강좌를 매 학기 1과목씩 개설하여 연구소 전임인력에게 담당하도록 함.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단, 2단계에서는 학칙개정 또는 규정제정을 통하여 연구소 강좌를 개설하여야 함.

※ 편람, 사전편찬, 교재 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지원규모 : 연구소 당 연간 2억원 이내

☞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 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포함될 경우에는 신청 연구비에 동 연구자와 관련된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계상 할 수 없으며, 해당 연구자는 연구비 신청한도액의 70% 이내로만 신청할 수 있음.

나. 지원예정연구소 수 : 11개 연구소 내외

다. 지원기간 : 3단계 6년 [1단계(2년) -> 2단계(2년) ->3단계(2년)]

Ⅲ. 공모 및 신청

가. 공모 방법

- 대학의 총(학)장에게 공문발송을 통하여 공고
- 재단 홈페이지 (<http://www.krf.or.kr>) 를 통하여 공고

나. 신청 방법

(1) 1차 신청

- 신청 대상 : 대학의 총(학)장 추천을 받은 대학부설연구소
- ※ 대학별 신청 가능 연구소수
 - 전임교원수 500명 미만의 대학 : 2개 연구소
 - 전임교원수 500명 이상의 대학 : 3개 연구소
 - 전임교원수 1,000명 이상의 대학 : 4개 연구소

○ 신청 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 **On-Line 신청**

② 연구참여자(세부과제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 업적 - **On-Line 입력**

③ 신청연구소 총괄표 1부(소정양식 #1)

④ 대학부설연구소 제출서류 6부(소정양식 #2) - 우편 제출용 -

- 부설연구소 지원계획서(양식 2-1), 연구소 현황(양식 2-2), 총괄연구과제 개요서(양식 2-3), 세부과제 연구개요서(양식 2-4)
- 현재 확보하고있는 전임연구원에대한 인사발령서류.

○ 신청 방법

- ①의 지원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에 접속하여 직접 작성(심사시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예정임)
- ②의 연구참여자의 연구업적은 재단 학술연구자정보 DB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연구과제 책임자와 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포함)은 재단 홈페이지의 학술연구자정보 DB에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반드시 수정·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④의 구비서류는 재단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연구소 소속 대학(교)의 총(학)장이 수합하여 일괄 신청

○ 신청 기간 : 2000. 5. 8(월) ~ 5. 17(수) 21:00까지

단, 우편제출 서류는 5. 22(월) 18 : 00 까지 제출

(2) 2차 신청

○ 신청 대상 : 요건 및 기반심사를 통과한 대학부설연구소

○ 신청 방법 : 재단 소정양식에 의거 연구계획서(6부)를 작성하여 연구소 소속 대학(교)의 총(학)장 이 수합하여 일괄 제출

○ 신청마감 : 1차신청 심사결과 발표시 학교별 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1 차신청 심사결과 공고(예정) : 6 월 30일경

- ☞ 연구업적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은 재단 홈페이지의 학술연구자 정보 DB를 활용하며, 연구비를 신청하는 연구자는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 수정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함

다. 신청 자격 및 요건

(1) 연구진 구성

- **총괄 책임자** : 연구소장
 - 연구소장은 총괄책임자가 되어 연구소 기반조성 및 연구과제 진행을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할 수(1과제에 한함) 있음
- **세부과제 책임자** : 해당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소의 전임연구인력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 인문·사회계열(예체능계열 포함) : '95. 1. 1 ~ '99. 12. 31 사이에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전문학술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등의 연구실적이 5편이상인 연구자.
 - 자연계열 : '95. 1. 1 ~ '99. 12. 31 사이에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특허 및 전문학술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포함)등의 연구실적이 5편이상인 연구자. 단,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포함)이 반드시 2편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SCI급 학술지에 논문게재가 곤란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 제출요망.

☞ 2002년부터 인문·사회계열은 학술진흥재단 전국규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자연계열은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논문이 3편 이상 포함되도록 상향 조정할 예정임.

* 전임연구인력이 세부과제 책임자인 경우에는 연구기간(2년내)내에 타기관으로 소속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하게 소속변경 시에는 중간평가때 이를 반영함.

○ 공동연구원

- 연구소 전임연구인력.

- 연구소 소속의 대학전임(기금, 석좌, 객원교수포함)교원으로써 인문·사회계열(예·체능계열 포함)은 '95. 1. 1 ~ '99. 12. 31 사이에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전문학술저서(학술적 가치가있는 역서포함)등의 연구실적이 3편이상인 연구자.

자연계열은 '95. 1. 1 ~ '99. 12. 31 사이에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특히 및 전문학술저서(학술적 가치가있는 역서포함)등의 연구실적이 3편이상인 연구자. 단,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포함)이 반드시 1편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SCI급 학술지에 논문게재가 곤란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 제출요망.

☞ 2001년부터는 대학전임교원인 공동연구원이 연구실적을 세부과제 책임자와 동일하게 적용 예정.

* 세부과제별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연구소 전임연구인력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함. 다만, 연구전임인력이 세부과제책임자를 맡는 경우에는 공동연구원의 연구소 전임인력은 1명 이상만 참여하면 됨

- 연구소 전임인력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신청 연구소에 상근하며, 연구에 전념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한 연구자에 한함.(반드시 대학총장의 임용발령)
 - 연구소 전임인력중 소속대학(박사학위) 출신은 50%이하 이어야 함.
 - 연구소 전임인력은 신청대학 이외에 다른 대학에 출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되, 연구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의 판단으로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
- 연구보조원 :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
- * 연구보조원은 세부과제별로 석·박사과정생 3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2) 연구과제 구성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총괄과제로 구성

□ 연구과제 최소 단위 모형 【1개의 세부과제인 경우】

구 성	내 용	비 고
총괄책임자	연구소 소장	
과제책임자	소속대학 전임교원 또는 연구소 전임 연구인력	총괄책임자 겸임가능(1과제)
공동연구원	· 연구소 전임인력 · 연구소 소속의 대학 전임교원 (기금.석좌.객원교수 포함)	연구소 전임인력 월 180만원 이상(50% 이상은 대학 대응 자금으로 충당)
연구보조원	석·박사과정생 3인 이상	박사과정; 월 30-60만원 석사과정; 월 20-40만원

【유의 사항】

- ※ 연구과제는 공동연구의 형태를 띠어야 하며, 세부과제는 유기적으로 연관된 주제로 구성되어야 함
- ※ 최초 지원 신청시 1단계(2년간) 전체를 포괄하는 총괄과제 및 계획서(개요)를 제출하고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는 유기적으로 연관된 주제로 구성되어야 함

4. 연구비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

가. 연구비 신청제한

(1) 연구소

- 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소 단위의 연구비를 지원 받고 소정의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소
- ☞ 기존에 재단의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어 연구비를 지원 받고 있는 대학부설연구소 중 '2000.12.31 이전에 연구기간이 종료되는 연구소는 금년도 신규지원 대상에 포함시킴
- 과학재단 우수연구센터(SRC, ERC, RRC)로 지원 받고 있는 연구소
- '99년도 재단 중점연구소로 선정된 연구소

(2) 연구진

-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의 연구비(대학교수해외파견 연구비 포함)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 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신청마감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급)으로 평가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0년도 교수해외파견연구 및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의 강의파견 수혜자 (단, 공동연구원으로는 1과제에 한하여 참여 가능)

나. 연구참여 제한

- 본 대학부설연구소 지원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단, 현재 수행중인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0.12.31 이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며, 교육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 국가주도의 대형 연구사업 책임자는 동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음
(예시 : 교육부 BK21사업단장, 과기부 창의과제, NRL, SRC, ERC, RRC 등)
- ☞ 교육부 BK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재단의 연구비 지원사업에 1인이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IV. 심사 및 선정

1. 심사 절차 및 내용

구 분		심 사 내 용	비 고
제1단계 (요건심사)		신청서에 대한 행정요건 심사	2단계 심사 대상 가부 판단
제2단계 (전공심사)	기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육성 의지(공간, 시설, 재정 지원) • 총괄 및 세부 과제책임자의 연구업적 • 총괄과제의 학문적 기여도 • 연구소의 업적 및 활동 상황 	지원 예정 연구소의 200% 이내 선정
	과제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연구계획서 평가 • 공동연구원의 연구업적 	기반심사를 통과한 연구소의 세부과제
제3단계 (종합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심사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정 • 최종 지원 연구소 선정 	연구소 선정 후 현장실사 실시

※ 3단계 종합심사를 마친 뒤, 3개월 이내에 현장실사를 통해 대학의 육성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연구소는 선정을 취소함. 현장실사에서는 대학의 지원 정도, 연구소 전임인력 채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함.

2. 지원 연구소 선정

- 선정 원칙 : 기반심사(60%)와 과제심사(4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가. 지급 방법 : 소속 대학(교) 총(학)장을 경유하여 지급

나. 지급 시기

- 1차 년도 연구비 : 최종 선정 후 50%, 3개월 이내 현장실사 후 50% 지급
- 2차 년도 연구비 : 연차별 평가 후 100% 지급

2. 연구비 관리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소 소속 대학(교) 총(학)장이 중앙관리해야 함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

-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했을 때
- 연구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상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했을 때
- 당초 연구결과보고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VI. 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7. 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중간보고서 (연차별)

(1) 제출시기 : 연구개시 후 10개월 이내

(2) 제출자료

- 연구계획 대비 연구진행 상황
- 연구소 지원계획서의 이행 상황

※ '99 지원연구소는 중간보고서 평가(현장실사포함) 후 다음 연도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나. 결과보고서 (단계별)

(1) 제출시기 :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이내

(2) 제출자료

- 연구결과논문(학술지 게재논문 또는 게재 요청된 논문) 또는 학술저서(원고)
- * 학술지 투고접수증 첨부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연구비 사용내역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 논문초록

* 한글버전 3.0이상으로 작성하여 e-mail(result@ms.krf.or.kr)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함.

- 1단계 대학의 연구소 지원 현황
- 2단계 연구비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 결과보고서 평가후 다음 단계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3)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지원을 중단함

다. 연구결과 발표 (단계별)

(1)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책무

중점연구소 수혜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2) 연구결과물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9개월이내

(3) 제출형태 : 학술저서 또는 논문 별쇄본

- 인문, 사회계열 : 세부과제별로 전문학술저서로 출판
- 자연계열 : 세부과제별로 국제 SCI급 전문학술지에 2편 이상 게재
(국제 특히 포함)

(4) 연구결과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000-○○○○○)”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KRF-000-○○○○○)”
- ※ 재단이 아닌 다른 연구비 수혜기관의 일부 보조표기 또는 병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연구결과물 미발표자(공동연구원 포함)에 대한 관리

- 연구결과물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는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교수 해외파견연구비 포함) 연구비 지원을 제한함

라. 연구결과 사후 관리

- 연구결과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
 - 연구결과물의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제공
 - 연구성과로 발생한 제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등)는 연구책임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등의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나 재단이 당초 연구비 지원시에 특정 조건을 제시하고 연구책임자가 이에 동의한 때는 예외로 함
- ※ 금년도부터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물은 재단 소정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C급은 경고 및 3년간, D급은 경고 및 5년간 연구비 지원대상 제외.

VII. 기타 사항

- 심사 학문분야 코드는 재단에서 정한 학문분류표를 참고하여 분야명 및 code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람.
- 신청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할 경우 신청 및 지원을 취소할 예정이므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 바람.

문의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평가지원 1팀

TEL (02)3460-5612 - 6 FAX (02)3460-5620

【붙임】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

연구비 산정 · 집행기준표(세부과제별)

항 목	내 용	산정 · 집행기준
①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석·박사 과정)의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과정생은 월 20~40만원 - 박사과정생은 월 30~60만원 - 전임연구인력 월 180만원 이상 (50%는 대학의 대응자금)
② 연구활동 경비/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월 15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회의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의 전문가 초청 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DNS)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등	- 실제 소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출장비, 현지교통 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소속기관 여비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여비는 학술회의의 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 만큼 인정 (왕복항공 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인쇄비, 수용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조사지 인쇄, OHP 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 현상 등에 필요한 경비	-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등 잡비 연구수행에서 발생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 과금, 논문게재료, 보험금, 각종 수수료(특허출원비 등)	
③ 직접성 경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게재료 	-실제소요액 (교육부 및 재단연구비와 관련된 논문의 발표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및 문헌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및 내구 년수 2년 이하인 시약, 기구, 소모성재료, 부품 등의 구입 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기기)의 사용료,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기비 2년 이상의 내구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계산조직, S/W포함)와 부수 기자재	- 품목,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실제 소요액

②항목은 국외여비를 제외하고 700만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외여비는 200만원 (단, 1인인 경우 100만원 이내) 이내로 신청할 수 있음.

【양식 1】

2000년도 대학부설연구소지원 신청총괄표

■ 대학명 :

교원수	신청 연구소수	신청 세부과제수	신청액		비고
			년차		
명	소	수	1년차		
			2년차		

※ 교원수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원수를 기입

【1】 연구소명 :

구분	과제명	책임자명	신청연구비
총괄			천원
제1과제			천원
제2과제			천원
제3과제			천원

【2】 연구소명 :

구분	과제명	책임자명	신청연구비
총괄			천원
제1과제			천원
제2과제			천원
제3과제			천원

【3】 연구소명 :

구 분	과 제 명	책임자명	신청연구비
총 괄			천원
제1과제			천원
제2과제			천원
제3과제			천원

【4】 연구소명 :

구 분	과 제 명	책임자명	신청연구비
총 괄			천원
제1과제			천원
제2과제			천원
제3과제			천원

※ 신청총괄표는 대학본부 연구처(과)에서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2】

대학부설연구소 제출서류 (郵送용)

연구소명	대학(교)	연구소	설립연도
전 화		팩스	E-MAIL
<p>대학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심사를 위한 연구소 지원계획, 연구소 현황, 연구과제 개요서를 별첨 내용과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함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작성자 : 연구소장 (직인) 확인자 : 총(학) 장 (직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p>			

- 첨부: 1. 부설연구소 지원계획서
 2. 연구소 현황
 3. 연구과제 개요서(총괄 및 세부). 6부.

■양식 2-1

부설연구소 지원 계획서

1. 대학의 연구소 지원 기본 계획

가. 대응투자 계획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비 고
재단신청액			
대응투자액			
대응투자비율(%)			
총 계			

<작성요령>

- * 대응투자비율은 신청액 대비 대응투자액의 백분율로 기입하십시오.

나. 연구소 전임인력 확보 계획

구 분	현 재	추가확보 계획	계	비 고
전임연구인력	명	명	명	
전임행정인력	명	명	명	
총계	명	명	명	

<작성요령>

- * ‘전임연구인력’에는 연구소에 상근하면서 매달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전임연구원만 기입하십시오.
- * 학과소속 연구소 겸임교수 및 재단 Post-doc은 연구소 전임인력이 아님.
- * 추가확보인원은 선정후 실사때까지 확보할 인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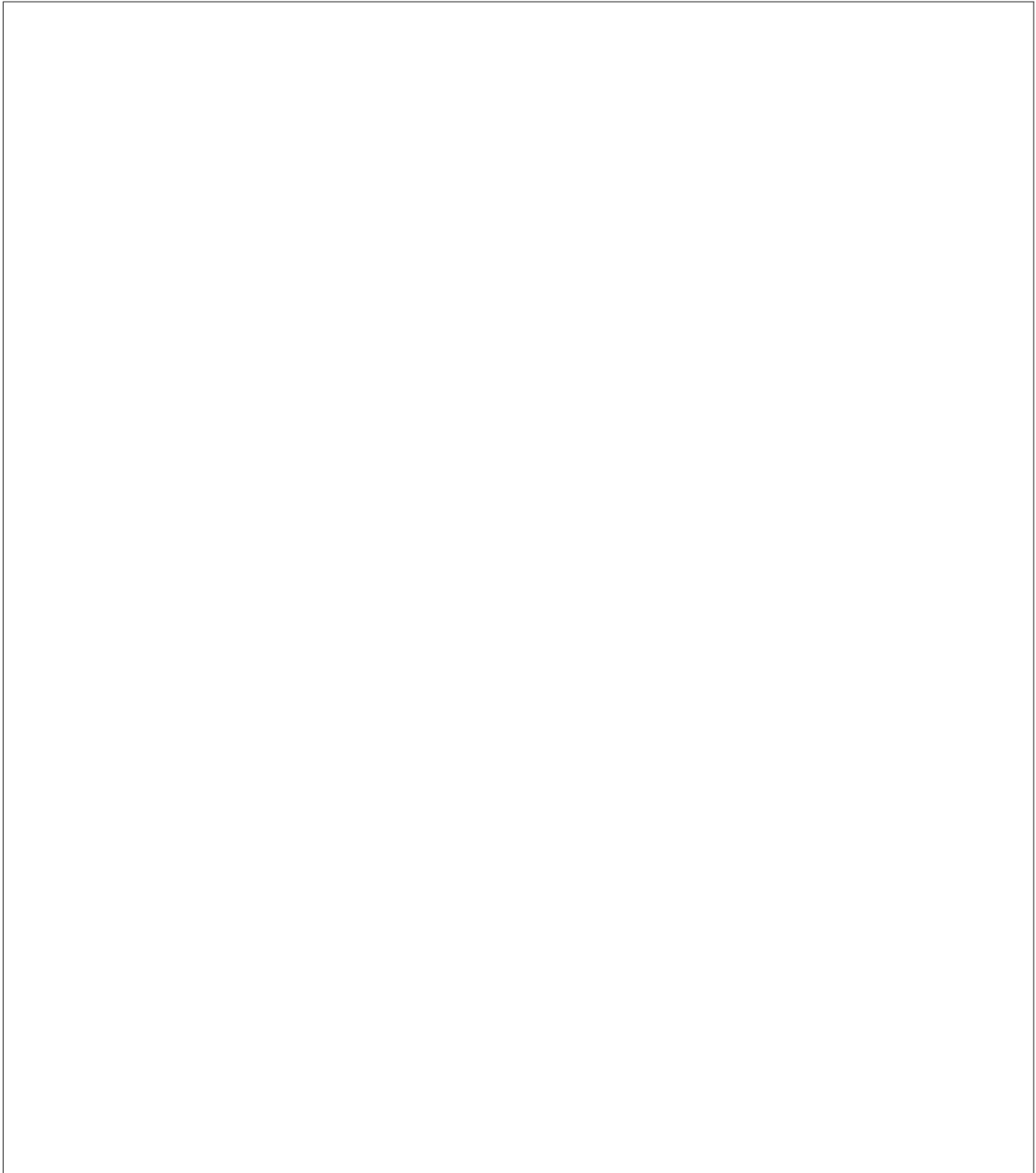
다. 연구소 시설 확보 계획

용 도	현 재	추가확보 계획	계	비 고
연구소 전용공간	m ²	m ²	m ²	
전임인력 전용공간	m ²	m ²	m ²	
총 계	m ²	m ²	m ²	

<작성요령>

- * ‘연구소 전용공간’은 전임인력의 연구공간을 제외한 면적을 기입하십시오.
- * 전임인력 연구공간은 전임인력에게 별도로 확보된 전용공간임(5평이상)

라. 연구소 전임인력의 연구성과 활용 계획



<작성요령>

- * 연구과제와 연계된 학점 인정 강좌의 개설 및 연구소 전임인력의 활용방안을 기술하십시오.
- * 연구과제의 성격상 강좌개설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구소 전임인력의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계획을 기술하십시오.(별지사용가능)

2. 연구소 육성 방안 및 특성화 계획

- * 대학에서 신청연구소의 육성 및 특성화에 대한 장·단기 계획(연구소를 재단에 지원 신청하도록 추천된 사유 등을 포함)과 1항의 항목별 확보계획 이외의 추가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page 내외로 기술하시오)

■양식2-2

연 구 소 현 황

1. 연구비 확보 및 연구과제 수행실적

구 분	1998년도	1999년도	계
건 수	건	건	건
금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작성요령>

* '98. 1. 1부터 '99. 12. 30까지 연구소명으로 계약된 연구과제만 기재하십시오.

* 학과소속 연구소 겸임교수의 개별 연구수행 과제는 제외(연구소명의로의 연구과제만 포함)

2. 학술회의 개최실적

■ 국내학술회의

번	개최기간	학 술 회 의 명	개최장소	발표지수
1				
2				
3				
4				

■ 국제학술회의

번	개최기간	학 술 회 의 명	개최장소	발표지수
1				
2				
3				
4				

<작성요령>

* '98. 1. 1부터 '99. 12. 30까지 연구소가 개최한 학술회의만 기재하십시오.

3. 산학/국제협동연구 추진실적

번호	연구기간	연구과제	참여연구자	협력업체/국가
1				
2				
3				
4				
5				

<작성요령>

- * '98. 1. 1부터 '99. 12. 31까지 연구소에서 추진한 실적만 기재하십시오.
- * '참여연구자'란에는 해당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소 소속교수 또는 연구원(전임, 비전임)의 이름을 기재하십시오.
- * 산학협동인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국제협동인 경우에는 협력국가를 기재하십시오.

4. 학술지 및 학술서 발간실적

학술지 / 학술서명	발간부수	발간회수	발간연월일
	부	회	
	부	회	
	부	회	
	부	회	
	부	회	
	부	회	
	부	회	

※ 연구소지원 기본계획의 대응투자계획, 전임인력 확보계획 및 시설확보 계획은 중점연구소 선정 통보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현장실사를 통하여 실행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를시는 선정을 취소 할 예정 이오니 실천 가능한 계획만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 2-3

총괄연구과제 개요서

(1단계 : 2000년 ~ 2001년)

총괄책임자 소속기관명	대학교 (소속기관명만 기재하시기 바람)		
학문분류	세부분야명		세부분야 CODE
	* 세부분야명은 신청연구과제 내용에 해당하는 세부전공분야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의 : 본인 전공분야가 아님) * 반드시 연구계획서와 동일한 세부분야명 및 세부분야코드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총괄과제명			
<p>연구내용</p> <p>* 연구의 배경, 목적,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요약하되 가능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p> <p>* 총괄과제 연구내용을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p>			

※접수번호	
--------------	--

* 기재하지 마십시오.

■양식 2-4

제 ○ 세부과제 연구 개요서

(1단계 : 2000년 ~ 2001년)

세부책임자 소속기관명	대학교 (소속기관명만 기재하시기 바람)		
학문분류	세부분야명		세부분야 CODE
	* 세부분야명은 신청연구과제 내용에 해당하는 세부전공분야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의 : 본인 전공분야가 아님) * 반드시 연구계획서와 동일한 세부분야명 및 세부분야코드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세부과제명			
<p>연구 내용</p> <p>* 연구의 배경, 목적,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요약하되 가능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p> <p>* 세부과제별 연구내용을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p>			

※접수번호	
--------------	--

* 기재하지 마십시오.